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7

발의연월일: 2024. 6. 28.

발 의 자:이수진・부승찬・김문수

김용만・김준혁・조 국

민병덕 · 박홍근 · 송옥주

이재강 · 이기헌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의 임차인의 대항력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다음 날 오전 영시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먼저 마치더라도 같은 날에 임대인이 저당권 등을 설정할 경우 그러한 권리 등이 우선하게 되어 임차인은 그권리자들에게 대항력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고, 임대주택의 경매 시 후순위채권자가 되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바 같은 날 등기부상 저당권 등이 설정될 경우 무조건 후순위가 되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같은 날 등기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

우 임차인이 무조건 후순위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내역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한편, 임차인은 저당권 설정을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3조의8 신설).

법률 제 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를 "즉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다음 날부터"를 "즉시"로 한다.

제3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8(근저당 설정의 통지 등) ①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후 임차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임대인은 그 내역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임차인은 해당임대주택의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항력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차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 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주택의 인도

- 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② 제3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인이 임차주택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제3조(대항력 등) ①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	
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	
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u>때에는</u>	즉시
<u>그 다음 날부터</u> 제삼자에 대하	
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	
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③
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	
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	
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	
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	
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	
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u>다음</u>	<u>즉시</u>
<u>날부터</u>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	
이 생긴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8(근저당 설정의 통지 등)
①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후 임
차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임대인은 그 내역을 임차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임차인은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인에 대
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보
증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